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8385 명의변경청구
원 고	A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별지 연번 1, 2, 18, 20, 21, 24, 27, 32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일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공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일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공과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외 2인이 2000. 7. 10. ○○ ○○구 C빌딩 지하 D, E, F, G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한 이래 위 영업은 여러 차례 승계되었고, 2011. 11. 15. 상호 'H', 수허가자 원고 명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나. 2011. 11. 29.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6. 12. 31. 폐업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에게 수시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외 4개 세목 53건 합계 16,856,92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의 위 53건 합계 16,856,9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 12. 31.까지 24건이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지방세 49건이 과세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별지 '전국 지방세 체납 및 정리보류 및 미납내역 안내'는 2022. 4. 21.에 발급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지방세 49건이 과세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2. 8.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 중 ○○○○시 ○○구청장 및 ○○○○시 ○○○구청장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1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연번 1, 2, 18, 20, 21, 27 부분은 ○○○○시 ○○구청장이, 별지 연번 24, 32 부분은 ○○○○시 ○○○구청장이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연번 1, 2, 18, 20, 21, 24, 27, 32 부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인 ○○○○시 ○○구청장이나 ○○○○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4. 나머지 예비적 청구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친구인 I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조).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유흥주점 영업의 수허가 명의자는 원고인 사실,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실사업자가 I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사업자가 I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한 별지 기재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별지 연번 1, 2, 18, 20, 21, 24, 27, 32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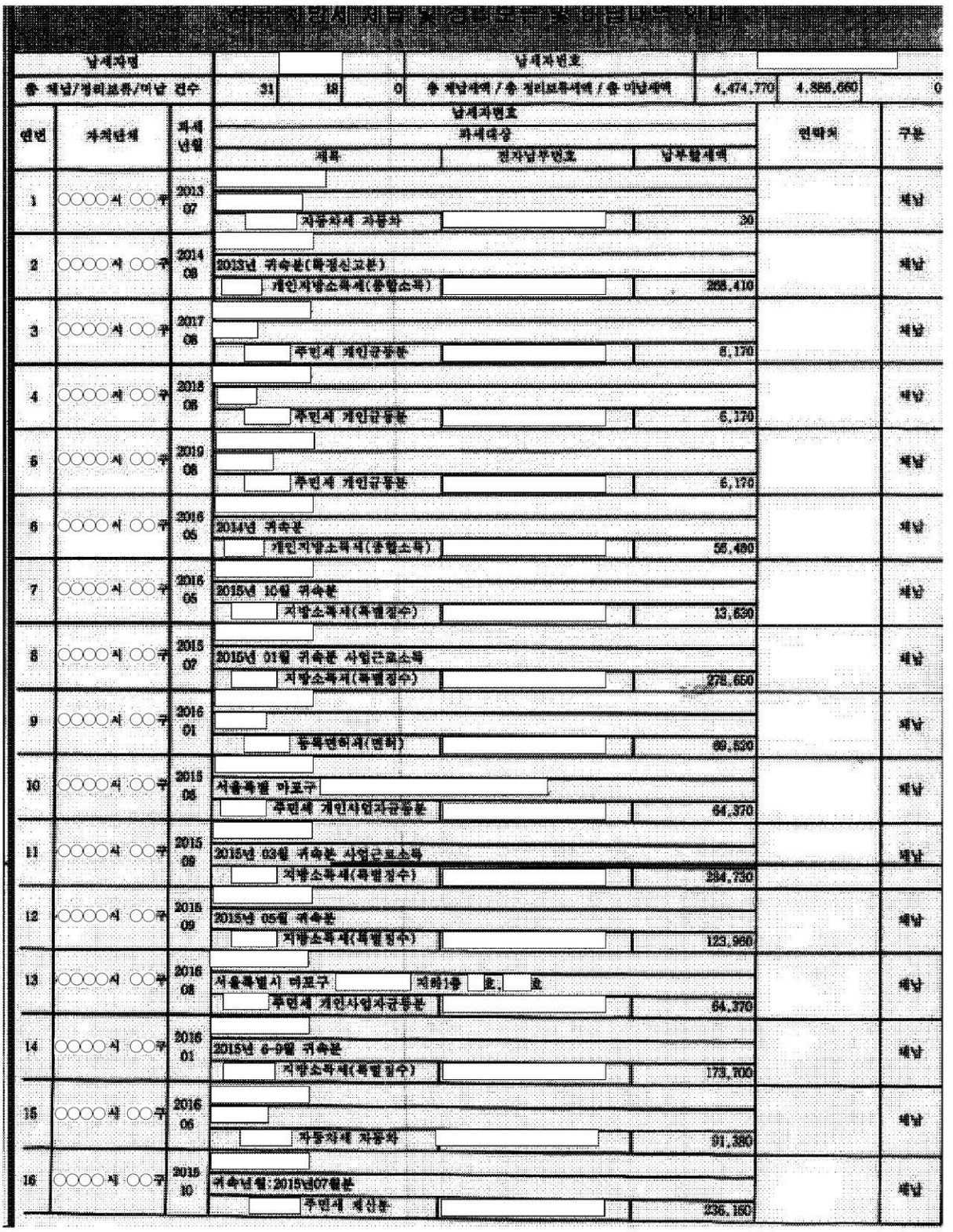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별지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총 체납/정리보류/미납 건수	31	18	0	총 체납세액 / 총 정리보류세액 / 총 미납세액	4,474,770	4,386,660	0

연번	과세관할	과세년월	납세자번호 / 과세대상 / 제목	전자납부번호	납부할세액	연락처	구분
1	○○○○시 ○○구	2013 07	자동차세 자동차		30		체납
2	○○○○시 ○○구	2014 08	2013년 귀속분(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8,410		체납
3	○○○○시 ○○구	2017 06	주민세 개인균등분		8,170		체납
4	○○○○시 ○○구	2018 06	주민세 개인균등분		8,170		체납
5	○○○○시 ○○구	2019 06	주민세 개인균등분		8,170		체납
6	○○○○시 ○○구	2016 05	2014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55,480		체납
7	○○○○시 ○○구	2016 05	2015년 10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3,630		체납
8	○○○○시 ○○구	2015 07	2015년 01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78,650		체납
9	○○○○시 ○○구	2016 01	등록면허세(면허)		69,520		체납
10	○○○○시 ○○구	2015 06	서울특별 마포구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64,370		체납
11	○○○○시 ○○구	2015 09	2015년 03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94,730		체납
12	○○○○시 ○○구	2016 09	2015년 05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3,960		체납
13	○○○○시 ○○구	2016 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1층 호, 호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64,370		체납
14	○○○○시 ○○구	2016 01	2015년 6-9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79,700		체납
15	○○○○시 ○○구	2016 06	자동차세 자동차		91,380		체납
16	○○○○시 ○○구	2015 10	귀속년월:2015년07월분 주민세 개인분		236,160		체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17	○○○○시 ○○구	06	자동차세 자동차	66,000		체납
18	○○○○시 ○○구	2014 10	2012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77,760		체납
19	○○○○시 ○○구	2019 06	자동차세 자동차	76,150		체납
20	○○○○시 ○○구	2015 06	자동차세 자동차	96,460		체납
21	○○○○시 ○○구	2013 12	자동차세 자동차	63,430		체납
22	○○○○시 ○○구	2015 09	2015년 04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90,170		체납
23	○○○○시 ○○구	2015 09	2015귀속(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860		체납
24	○○○○시 ○○○	2020 06	주민세 개인균등분	6,170		체납
25	○○○○시 ○○구	2016 06	주민세 개인균등분	6,170		체납
26	○○○○시 ○○구	2021 06	주민세(개인분)	6,170		체납
27	○○○○시 ○○구	2014 06	자동차세 자동차	101,540		체납
28	○○○○시 ○○구	2016 11	2013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72,250		체납
29	○○○○시 ○○구	2015 07	2015년 02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0,190		체납
30	○○○○시 ○○구	2017 06	자동차세 자동차	66,320		체납
31	○○○○시 ○○구	2018 06	자동차세 자동차	61,230		체납
32	○○○○시 ○○○	2020 06	자동차세 자동차	71,070		정리보류
33	○○○○시 ○○구	2014 11	2014년 07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33,560		정리보류
34	○○○○시 ○○구	2014 09	2014년 03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512,230		정리보류
35	○○○○시 ○○구	2014 09	2014년 04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20,530		정리보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7

36	○○○○시 ○○구	12	2014년 08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83,100		정리보류
37	○○○○시 ○○구	2014 05	2014년 02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93,620		정리보류
38	○○○○시 ○○구	2014 11	귀속년월 : 2014년07월분 주민세 개산분	237,970		정리보류
39	○○○○시 ○○구	2014 11	2014년 06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81,080		정리보류
40	○○○○시 ○○구	2014 08	서울 마포구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36,000		정리보류
41	○○○○시 ○○구	2014 04	2013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731,070		정리보류
42	○○○○시 ○○구	2014 06	(2014년도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64,370		정리보류
43	○○○○시 ○○구	2014 09	2014년 05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85,470		정리보류
44	○○○○시 ○○구	2014 05	2014년 01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55,450		정리보류
45	○○○○시 ○○구	2015 04	2014년 12월 귀속분 사업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13,480		정리보류
46	○○○○시 ○○구	2015 01	2014년 09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39,030		정리보류
47	○○○○시 ○○구	2015 04	2014년 11월 귀속분 사업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75,110		정리보류
48	○○○○시 ○○구	2015 07	2015년 02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95,380		정리보류
49	○○○○시 ○○구	2015 02	2014년 10월 귀속분 사업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37,800		정리보류

귀하가 납부해야 할 총 체납/정리보류/미납 액은 9,361,430원이므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리보류내역은 해당 지차단체에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끝.